



법령
규제

변경사항의 처리



김창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 기술기준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변경은 사업소를 이전하는 대규모의 변경에서부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각종 변경사항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변경허가

변경허가는 명칭 그대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따라서, 허가증 상의 기재항목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허가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사업소의 제원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대수 • 성능
- 사용목적 및 사용장소
-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저장능력
- 허가조건 및 허가일자

가. 사업소의 제원

사업소의 제원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구분되는데, 소재지를 제외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처리되므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소재지의 변경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시설 등이 위치한 사업소의 이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사업소를 지방으로 옮겨간다던지 하여 사용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용시설 등을 임대하여 설치한 판매업체, 소규모 자영업체 또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이외에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소의 변경은 방사선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떤 변경보다 중요하며,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새로운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 방사선안전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성동위원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수량

변경허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이며, 핵종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특정 핵종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간혹, 어떤 방사성동위원회 핵종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핵종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핵종을 추가시키면서 전체적인 수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다. 사용목적 및 사용장소

사용목적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용목적의 변경은 사용목적의 추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회 등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회 등의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시에 함께 거론될 사안이다.

사용장소의 변경은 동일 사업소 내에서의 이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층의 시설을 2층으로 옮기거나 101호실의 시설을 바로 옆의 102호실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장소를 추가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동일 사업소내의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소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 제출하였던 인?허가 첨부서류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

라. 저장시설의 저장능력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은 인?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대상의 하나이다. 저장시설에는 신규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회가 위치하게 되므로 방사능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안유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사용시설과 함께 중요하게 취급되며, 대부분의 사업소에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산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사업소에서 교체용 선원을 미리 구입하여 저장하는 경우란 흔하지 않으므로, 전용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란 비파괴검사 전문사업소, 판매업체, 일부 의료기관 및 개봉선원을 사용하는 사업소 정도이며, 따라서 저장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들 사업소가 대부분이다.

저장능력의 변경이란 필연적으로 저장시설의 보완 또는 신규설치와 연계되므로 경제적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량을 늘이면서도 가급적 저장능력은 변경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량을 증가하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접하게 되면 우선 저장시설의 적정성부터 확인하여 만일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 허가조건 및 허가일자

허가조건은 원자력법 제104조(허가 또는 지정조건)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일컫는 것으로서 최초 허가증 발급시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이 부여되는 경우는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에서 사용시설, 분배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및 폐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판매허가에 대하여 “원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흔한 예가 아니다. 허가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선원 또는 방법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그에 의한 변경허가 시에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2.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사용 및 이동사용의 변경신고와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가. 사용 및 이동사용변경신고

사용 및 이동사용변경신고는 명칭 그대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따라서, 신고필증 상의 기재항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신고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면 된다.

- 상호,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종류 및 수량 : 신고대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일, 허가대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외에,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감소하는 것도 변경신고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감소를 위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 소재지, 사용목적 및 사용장소 : 사용목적의 변경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증가를 의미하므로 해당 변경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

나. 업무대행자등록 변경신고

신규 업무대행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처

리되고 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대행자 등록증과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 판독업무자등록 변경신고

신규 판독업무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대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등록증과 함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라. 운반신고의 변경신고

운반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팩스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란 출발일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수량의 변경 등과 같이 경미한 내용이 고작이다.

3. 변경승인

변경승인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과 운반용기의 설계변경승인이 있다.

가.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설계승인서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설계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

설계승인서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4.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이란 명칭 그대로 변경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의 인?허가절차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자력법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정리해 보자

가. 사용허가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분야도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계속된 개정이 있어 왔다.

1)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단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며, 일단 줄인 수량을 늘리는 것은 변경허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면허와 연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과거에 잠시나마 사용시설 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증가에 따른 시설 변경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미한 사항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은 성명은 대표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소의 변경이란 혼한 예는 아니지만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을 의미한다. 즉,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변경되거나 구(區)의 신설 또는 통합 등과 같이 소재지는 불변이지만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호명의 변경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합병을 한다던가 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인·허가절차에 준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과거에 유지되어 왔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제도가 삭제되면서 면허소지자의 고용의무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인력기준으로 대체되고, 그 명칭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것도 변경허가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

4) 허가사용자가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신고사용자가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도록 규정된 것이다. 물론 동일사안에 대한 규정적용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느끼기에 변경신고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어쨌든, 대안으로 허가사용자가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역시 승인제도가 삭제되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켰다. 물론 사업자의 편의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과 달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은 때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의 처리시한인 하루만에 처리하기에는 심사자의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청에 앞서 가급적 심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에만 해당되며, 상세 내용은 사용허가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와 동일하다.

다.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방사선기기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에만 해당된다.

5.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허가받아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다 보면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가 발생한다. 물론, 사용장소의 변경은 변경허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변경의 기간이 길지 않고 변경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원래의 위치로 환원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외에서 검정?교정 또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즉, 비파괴전문검사업체에서 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와 같은 사유로 변경신고가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이 경우도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10여년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방사성폐기물 1드럼을 전시할 때 적용하였다. **KRIA**